

#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세무1과)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90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출 자 | 성북구청장(2023. 2. 9.)                 |
| 의 안 명 |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|
| 검 토   | 전문위원 정 진 만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 
나. 사회재난\*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\*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 으로 선포(’ 22.10.30.)

## 2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 :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구세 감면내역

○ 재산세 :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감면 동의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<sup>2)</sup>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(재산세) 감면을 추진하고자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현재, 전국적인 감면대상자는 파악되지 않아 감면 규모는 아직 미확정이며,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내역을 토대로 감면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임.
- 유가족 내역과 정기분 과세시의 과세기준일(2023. 6. 1.)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임이며, 주소지가 성북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이 성북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됨.
- 현재 성북구 희생자(2명) 및 그 가족의 성북구 소재 재산 소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---

1)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2)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